

앞서가는 송파, 당신을 담습니다



송파구



수신자 건설 폐기물배출자 133개소
(경유)

제목 건설 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분부담금 안내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1.1.부터** 모든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 등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으로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건설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귀 사업장에서 발생·배출·처리하는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사업장에서는 2018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감량 실천 및 재활용 활성화로 폐기물처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폐기물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이후 배출량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시 및 정기 납부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및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폐기물처분부담금 안내문 1부.
2. 진행중공사-건설폐기물배출자 명단 1부. 끝.

송 파 구 청 장



★주무관 이지현 도시청결팀장 송춘섭 자원순환과장 02/09 정용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3347 (2018.02.09.) 접수 ()

우 05552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천동) / http://www.songpa.go.kr
전화 (02)2147-2860 /전송 (02)2147-3875 / 이메일:ljhSORA@songpa.go.kr / 부분공개(5,6,7)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부담금 부과 요건	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 부과·징수기관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포함)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건설폐기물배출자)	한국환경공단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구분	대상자	신고기한	신고내용	신고처
정기신고	계속 사업장 (수시신고자 외)	매년 3월 31일까지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	한국환경공단
수시신고	건설공사 등에 따른 사업장에서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경우	폐기물배출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정기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사업장폐기물 상시배출자)

* 수시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제9호(사업장폐기물 일시배출자)

* 일시배출자라도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 전년도 배출량은 당해연도 3월30일까지, 당해연도 배출량은 배출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정기신고는 2019년에 최초로 신고(2018년도 소각·매립 처분량부터 대상임)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금액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

$$\text{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kg)} \times \text{부과요율(원/kg)} \times \text{산정지수}$$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부과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산정지수: 최초 적용연도 1 (그 다음 해: 전년도 산정지수×가격변동지수)

□ 폐기물처분부담금 문의처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면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진흥처 폐기물처분부담금팀(T. 제도 문의: 032)590-5081~86, 시스템 문의: 032)590-5086~87, FAX: 032)590-4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원순환기본법」 제36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법 시행령 과태료부과기준[별표7]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사항, 신고 서식 등)은 인터넷 <http://www.budamgum.or.kr>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